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59

제출년월일 : 2018. 4.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이용료 및 감면 규정과 조문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우선순위, 사용시간, 부가가치세, 초과사용료 등 규정 정비(안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1호)

나.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이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변경과 별표 정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7)

다. 사용료 등 감면 사항 정비(안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7호)

라. 조문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2) 규제심사 결과 : 원안 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2. 28.~ 3. 21

나) 예고결과 : 의견 접수 5건

(1) 사용허가 시간 문구 수정(제9조제4항) : 반영

(2) 감면 대상 추가(제13조제3항) : 반영

(3) 초과시간 전용사용료 문구 수정(제12조) : 반영

(4) 신규(준공예정) 체육시설 사용료 등(별표1, 2, 3, 4) : 반영

(5) 천연잔디 축구장 사용허가 제한 (별표2) : 미반영

5)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통하여”를 “통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 단체의 가맹경기 단체”를 “그 가맹경기단체”로, “종목행사”를 “종목 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허가신청에 있어”를 “허가신청을 할 때”로, “사용내역ㆍ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를 “사용 내용, 관람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을 “내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현행의 제2호) 중 “주관하는”을 “주최ㆍ주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현행의 제3호) 중 “다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현행의 제4호) 중 “주관하는”을 “주최 ㆍ주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의 경우

제5조제1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개방시간ㆍ이용방법”을 “개방시간, 이용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하여”를 “세워”로, “고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고를”을 “향상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ㆍ보수”를 “개수ㆍ보수”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할”을 “해칠”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만취된 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휴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하게 하는 자”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사용시간”을 “사용ㆍ이용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일사용시간”을 “1일 사용ㆍ이용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실내시설	실외시설	
	동·하절기 (연중)	하절기 (4월~9월)	동절기 (10월~3월)
조기	06:00~09:00	05:00~08:00	06:00~09:00
주간	09:00~18:00	08:00~19:00	09:00~18:00
야간	18:00~23:00	19:00~23:00	18:00~23:00

제9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용·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시설의 사용·이용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사용시간"을 "제1항에 따른 1일 사용·이용시간"으로,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를 "1일 사용·이용시간을 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허가시"를 "사용허가시"로,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 제목 중 "관람권에 의한"을 "관람권 발급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용사용자"를 "시장은 전용사용자"로, "기타행사는 15퍼센트 가산한"을 "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를 더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사용자"를 "전용사용자의"로, "관람료"를 "관람권에 관람료"로, "관람권에 의한"을 "관람권 발급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초과사용료"를 "초과 사용·이용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초과사용시간"을 "초과 사용·이용시간"으로 한다.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초과시점 기준 사용료의 시간당 요금 산정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80% 범위내"를 "80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0% 범위내"를 "50퍼센트 범위 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0 범위”를 “50퍼센트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구사격장의 이용료는 별표 3 중 비고란의 제3호에 따른다.

제1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1급～3급”을 “1급부터 3급까지”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제1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제13조제3항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중”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중”으로, “아니하는 자”를 “아니하는 사람”으로, ““고궁 등 이용증””을 “고궁 등 이용증”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 본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제6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별도의”를 “각 해당자별”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마.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사용·이용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개시일 1일전”을 “사용 시작일 1일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용개시일 전일”을 “이용 시작일 전날”로, “반환, 이용개시일”을 “반환하고, 이용 시작일”로, “종료일까지”를 “종료일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강습에 따른 월 이용료는 강습 시작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하고, 강습 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제14조제1항제4호 중 “상업”을 “상업시설”로, “(행사일전 미리 설치된 것도”를 “(행사일 전이라도 미리 설치한 것이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혹은”을 각각 “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으로”를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자의 책임”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를 “사용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로, “때에는 사용자가”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안”을 “시설 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을 “사용기간 중”으로, “때”를 “경우”로, “얻어”를 “받아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사용기간 만료와”를 “사용기간이 끝남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행”을 “이를 이행”으로, “이를 대집행”을 “대집행”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최시의”를 “개최 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전용 사용자측”을 “전용사용자측”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6세이하”를 “6세 이하”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휴대한 자”를 “지닌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당해시설”을 “해당시설”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을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허가ㆍ사용료”를 “사용허가 및 사용료ㆍ이용료”로 한다.

제23조의2 본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업소에 한정하여 위임한다.

별표 1 중 시민운동장 명칭란의 “씨름장”을 “스쿼시장”으로 하고, 대구체육공원 명칭란의 론볼장란 다음에 씨름장란을 신설하며, 씨름장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로 2-46

별표 2,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단위: 원)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시 민 운동장	축 구 장		주간	전체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3시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야간	전체	900,000	1,300,000	1,800,000	2,500,000
				3시간	750,000	1,120,000	1,500,000	2,250,000
	야 구 장		주간	전체	250,000	400,000	450,000	750,000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전체	180,000	270,000	360,000	540,000
				3시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시민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정 구 장 (면당)				20,000	30,000	40,000	60,000
	유소년축구장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스쿼시장 (면당)		주간(3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대 구 스타디움	주 경기장	육상장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축구장	주간	전체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3시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야간	전체	900,000	1,300,000	1,800,000	2,500,000
				3시간	750,000	1,120,000	1,500,000	2,250,000
	보 조 경기장	육상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축구장	주간	전체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3시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전체	360,000	540,000	720,000	1,080,000
				3시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야외공연장(1회4시간)						70,000	100,000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씨름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	야구장		주간	전체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3시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전체	360,000	540,000	720,000	1,080,000
				3시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육상진흥 센 터	실내육상 경기장		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시민생활 스포츠센터	실내경기장 (다목적시설)		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강 변 축구장	천연잔디		주간	전체	250,000	370,000	750,000	1,00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면당)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대구실내빙상장			주 · 야간 (시간당)		50,000	70,000	70,000	100,000
범어궁도장			주간 3시간		30,000	40,000	50,000	70,000
두 류 운동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면당)	센타코트	주간	전체	100,000	150,000	200,000	300,000
				2시간	-	-	70,000	80,000
			야간	전체	150,000	220,000	300,000	450,000
				2시간	-	-	90,000	100,000
		제1서브코트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서브코트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야구장				50,000	70,000	100,000	150,000
두 류 수영장	경영풀		09:00~18:00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09:00~12:00		210,000	310,000	420,000	630,000
			12:00~18:00		450,000	670,000	900,000	1,350,000
	경 영 연습풀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다이빙장		09:00~18:00		210,000	310,000	500,000	750,000
			09:00~12:00		60,000	90,000	180,000	270,000
			12:00~18:00		150,000	220,000	360,000	540,000
대 구 체육관	실 내 체 육 관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만 촌 경기장	자전거경기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인라인롤러 경기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	수영장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소강당	주간	4시간	-	-	50,000	70,000
		야간	4시간	-	-	70,000	100,000
	탁구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0,000	60,000	9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주 간		90,000	130,000	150,000	220,000
		야 간		130,000	200,000	220,000	33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대덕승마장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성 서 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전체	120,000	180,000	360,000	54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야외공연장(1회4시간)					70,000	100,000
	수영장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대 구 사격장	실 내 사격장	공기총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런닝타켓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결선사격장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화약총 (25·50m)	주 간	30,000	40,000	40,000	50,000
	클레이 사격장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주 간	면당 40,000	면당 50,000	면당 50,000	면당 6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성서산업	축구장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단 지 체육공원	(인조잔디)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전체	120,000	180,000	360,000	54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 체육관	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탁구장 (1, 2)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0,000	60,000	90,000
	풋살장 (면당)	주간	1시간	20,000	30,000	40,000	50,000
		야간	1시간	30,000	40,000	50,000	60,000
	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비 고	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정하지 않은 야간사용료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추가함 (10,000원 미만 절사)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함 6. 대구사격장은 전자표적을 사용할 경우 별표 3의 전자표적 이용료를 별도 징수함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스쿼시장, 테니스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 및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축구장의 야간요금은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3]

체육시설이용료(주 · 야간)(제10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원)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시 민 운동장	야 구 장		1회 2시간당		2,000	1,400	40,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시민체육관		1회 2시간당		2,000	1,400	40,000
	정 구 장		1회 2시간당		2,000	1,400	40,000
	유소년축구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스쿼시장		1회 1시간당		4,000	2,800	80,000
대 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육상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보조경기장	육상장	1회 2시간당		500	300	10,000
대 구 체육공원	암벽등반장		1회 2시간당		2,000	1,400	30,000
	씨름장		1회 2시간당		500	300	10,000
대구실내 빙 상 장	링 크		1회	어 른	3,500	2,4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100	60,000
				어린이 · 노인	2,500	1,700	50,000
대구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 2시간당		2,000	1,400	40,000
	부속도장 및 유 · 검 · 역도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범어궁도장	궁도장		1회 3시간당		2,000	1,400	40,000
	활 대여		1개당		1,000		
	화살 대여		5개당		500		
두류운동장	야구장		1회 2시간당		1,500	1,000	30,000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두 류 수영장	실내 수영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 · 노인		2,000	1,500	40,000
		정기 (15회)	어 른		35,000	-	-
			청소년 · 군인		30,000	-	-
			어린이 · 노인		20,000	-	-
	실외 파도풀	1회	어 른	토 · 공휴일	20,000	14,000	-
				평 일	14,000	10,000	-
			청소년 군 인	토 · 공휴일	15,000	10,000	-
				평 일	10,000	7,000	-
			어린이 경 로	토 · 공휴일	10,000	7,000	-
				평 일	7,000	5,000	-
			유 아	토 · 공휴일	5,000	3,000	-
				평 일			
만촌경기장	자전거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	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 · 노인		2,000	1,500	40,000
	체육관	1회 2시간	어 른		2,500	1,700	30,000
			청소년 · 군인 어린이 · 노인		2,000	1,400	25,000
	탁구장	1시간	어 른	단식	2,500	1,700	40,000
				복식	2,000	1,400	-
			청소년 · 군인 어린이 · 노인	단식	2,000	1,400	34,000
				복식	1,700	1,200	-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어 른		3,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경기장	1회	어 른		1,500	1,100	30,000
			청소년 · 군인		1,000	700	20,000
			어린이 · 노인		800	600	16,000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대덕승마장	경 기 장	1회 1시간	어 른	30,000	21,000	400,000
			청소년·군인	20,000	14,000	300,000
			어린이·노인	15,000	10,000	200,000
			자마이용자	350,000/월		
승마힐링 센터	재활승마	1회		30,000	21,000	
	체험승마	1회		10,000		
	일반상담	1회		20,000		
	집단상담	1회		10,000		
성서운동장	수 영 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노인	2,000	1,500	40,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어 른	3,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대구사격장	실내사격장 / 공기총 / 10M / 사 대	1회 1시간당		800	500	
		1회 2시간당		1,500	1,000	
	실내사격장 / 공기총 / 10M / 전자표적 / 소총	1회 1시간당		800		
		1회 2시간당		1,500		
	실내사격장 / 공기총 / 10M / 전자표적 / 권총	1회 1시간당		900		
		1회 2시간당		1,800		
	실내사격장 / 화약총 / 25M / 사대 / 권총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실내사격장 / 화약총 / 25M / 사대 / 속사	1회 1시간당		4,500	3,000	
		1회 4시간당		14,000	10,000	
	실내사격장 / 화약총 / 25M / 전자표적 / 권총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1회 1시간당		4,000		
		1회 4시간당		13,000		
	실내사격장 / 화약총 / 25M / 전자표적 / 속사	1회 1시간당		6,000		
		1회 4시간당		20,000		
	실내사격장 / 화약총 / 50M / 사 대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실내사격장 / 화약총 / 50M / 전자표적 / 소총 권총	1회 1시간당		4,500		
		1회 4시간당		16,000		
	실내사격장 / 화약총 / 런닝타겟	1회 1시간당		2,500	2,000	
		1회 2시간당		5,000	4,000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대 구 사격장	클레이 사격장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접시25장		8,000	7,000	
	관광 사격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실탄25발 접시25장	24,000	20,000	
				실탄10발 접시10장	11,000	9,000	
		권 총	22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3,000	11,000	
			9mm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38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357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공기소총 공기권총	4.5mm	실탄20발 표적 2장	4,000	3,000	
				실탄10발 표적 1장	2,000	1,500	
	전투체험사격장		1회당 (탄창 200발)	어른	14,000	12,000	
				어린이, 청소년	11,000	9,000	
			탄창추가				1,000
	스크린사격장		1종목당	어른	2,000	1,500	
				어린이, 청소년	1,500	1,000	
	비비탄사격장		1종목당	어른	3,000	2,500	
				청소년	2,500	2,000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	탁구장		1시간	어 른	단식	2,500	1,700	40,000
					복식	2,000	1,400	-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단식	2,000	1,400	34,000
					복식	1,700	1,200	-
	체육관		1회 2시간	어 른		2,500	1,700	30,000
				청소년, 군인, 어린이, 노인		2,000	1,400	25,000
비 고	1. 단체는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이 동일 소속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다만, 야구장, 수영장은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함) 2. 월회원은 강습비 미포함 금액임 3. 대구사격장은 군인, 청소년, 회원(연회비 100,000원) 및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단체 이용료를 적용(전투체험사격장, 스크린사격장 어린이·청소년 이용료 제외)하며, 관광사격은 실탄, 표적, 조끼대여, 총기대여 포함 금액임 4. 승마힐링센터의 체험승마는 단체인 경우, 어린이 이하 5,000원, 청소년 이상 7,000원으로 한다. 5. 감경 시 발생하는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별표 4]

체육시설조기이용료(제10조제1항제3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시민운동장	정 구 장	1월	28,000
	스 쿼 시 장	1월	56,000
두류운동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서브코트)	1월	35,000
두류테니스장	경 기 장	1월	35,000
대구체육공원	씨 름 장	1월	7,000

[별표 7]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제6호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시설		사용전기요금 +기본사용료	· 기본사용료 - 축구·야구장: 50,000 - 기타경기장: 30,000
방송시설	앰 프	50,000	
	확성기(1조) 1일	5,000	
	이동식앰프	20,000	
전기		사용전기요금	
식당, 다과점, 매점, 점포, 사무실, 도장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광판	1일	기본사용료 +사용전기요금	· 기본사용료 - 칼라: 100,000 - 흑백: 30,000 - 스코아보드: 20,000
인조잔디 관수료	1회(2시간)	27,000	
롤러스케이트 대여료	1회	2,000	
바닥 보호 매트	1회	100,000	
냉·난방	1회	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및 유류비용	기본사용료 : 30,000
실탄보관	1발·1년	5	
	1년	300,000	대형보관함(60×70×105㎝정도)
	1년	200,000	소형보관함(60×70×70㎝정도)
숙 소	2인실(1박)	25,000	대구사격장, 육상진흥센터
	4인실(1박)	40,000	대구사격장
	단체(10인 기준)	100,000	대구사격장
대덕승마장	마방	평일10,000,공휴일15,000	1두 기준/1일
		90,000	1두 기준/월
	말 관리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건비～마장유지 보수비

구 분	기 준		평 일	토요일, 공휴일	비 고
육상진흥센터	멀티 미디어실	주간	50,000	70,000	1회 4시간 기준
		야간	70,000	100,000	〃
성서산업 단 지 체육시설	소회의실	주간	30,000	50,000	〃
		야간	50,000	70,000	〃
	세미나실	주간	50,000	70,000	〃
		야간	70,000	100,000	〃
기타시설물	시장이 따로 정함				
비 고	조명시설, 전기, 전광판, 냉난방 등의 사용 전기량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전체 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3. ---------- 통한 ----------.
4. "체육경기"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위 단체의 가맹경기 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경기와 대구광역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행사를 말한다.	4. ---------- 그 가맹경기단체 ---------- 종목행사------.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군인"이란 「군인사법」에 따른 하사 이하의 군인 및 「병역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대원·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10. ---------- 따른----------.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3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관람권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 허가신청을 할 때 ---------- 사용 내용, 관람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③ ---------- 내고 이용권을 발급받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 주최·주관하는 ----------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 여러 사람----------

현 행	개 정 안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 ---------- 주최 ·주관하는 ----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기타	7. 그 밖의 경우
제5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 없으면 ---------- 개방시간, 이용방법 ----------.
② 시장은 체육시설에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 ---------- 세워 ---------- 알려야 ------.
③ 시장은 소관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향상을 ----------.
제6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의 개·보수	2. ---- 개수·보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 ---------- 해칠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
제8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의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자	1. ---------- 사람 ---------- 사람
2. 술에 만취된 자	2. --- 만취한 사람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td><td>3. ---------- 지닌 사람</td></tr>
<tr><td>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td><td>4. ---------- 어지럽히는 사람</td></tr>
<tr><td>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td><td>5. 그 밖에 ---------- 사람</td></tr>
<tr><td>제9조(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td><td>제9조(사용 · 이용시간) ① ------- 1일 사용 · 이용시간----------.</td></tr>
<tr><td><table><tr><th>구분</th><th>하절기
(4월～9월)</th><th>동절기
(10월～3월)</th></tr><tr><td>조기</td><td>05:00～08:00</td><td>06:00～09:00</td></tr><tr><td>주간</td><td>08:00～19:00</td><td>09:00～18:00</td></tr><tr><td>야간</td><td>19:00～23:00</td><td>18:00～23:00</td></tr></table></td><td><table><tr><th rowspan="2">구분</th><th>실내시설</th><th colspan="2">실외시설</th></tr><tr><th>동 · 하절기
(연중)</th><th>하절기
(4월～9월)</th><th>동절기
(10월～3월)</th></tr><tr><td>조기</td><td>06:00~09:00</td><td>05:00~08:00</td><td>06:00~09:00</td></tr><tr><td>주간</td><td>09:00~18:00</td><td>08:00~19:00</td><td>09:00~18:00</td></tr><tr><td>야간</td><td>18:00~23:00</td><td>19:00~23:00</td><td>18:00~23:00</td></tr></table></td></tr>
<tr><td>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그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td><td>② 제1항에 따른 사용 · 이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 이용을 중단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td></tr>
<tr><td>③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사용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이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td><td>③ ---------- 제1항에 따른 1일 사용 · 이용시간---------- 1일 사용 · 이용시간을 따로----------.</td></tr>
<tr><td>〈신 설〉</td><td>④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td></tr>
<tr><td>제10조(사용료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td><td>제10조(사용료 등) ① ---------- 각 호-----.</td></tr>
<tr><td>1. ～ 6. (생 략)</td><td>1. ～ 6. (현행과 같음)</td></tr>
<tr><td>②전용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는 추산액을 우선 납부하고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td><td>② ---------- 사용허가 시 ---------- 10일 이내----------.</td></tr>
<tr><td>③ (생 략)</td><td>③ (현행과 같음)</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④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관람권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사용료에 체육경기ㆍ문화예술행사는 관람권 매표액의 5퍼센트(단, 프로구단의 경기는 10퍼센트), 기타행사는 15퍼센트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제11조(관람권 발급에 따른 사용료) ① 시장은 전용사용자----------그 밖의 행사는 15퍼센트를 더한----------.
②제1항의 관람권은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 8의 체육시설 입장료 이상이어야 한다.	② ---------- 전용사용자의 ---------- 관람권에 관람료-------- 관람권 발급에 따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12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2조(초과 사용ㆍ이용료)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또는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과 사용ㆍ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초과 사용ㆍ이용시간----------.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 당해 주간사용료의 20퍼센트	1. 초과시간당 전용사용료: 초과시점 기준 사용료의 시간당 요금 산정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2. 초과시간당 이용료 : 당해 기준이용료의 50퍼센트	2. 초과 시간당 이용료: 해당 기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 감면은 할 수 없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별표 7)는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감면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1의2. 사용료 등의 80% 범위내 감경	1의2. --------- 80퍼센트 범위 내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사용료 등의 50% 범위내 감경	2. --------- 50퍼센트 범위 내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대상 행사	다 . ---------- 따른 ----------
라.·마. (생 략)	라.·마. (현행과 같음)
③ 별표 3 및 별표 4의 이용료(초과 이용료를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단, 대구사격장은 별표 3의 비고 제10호에 따른다.	③ ---------- 50퍼센트 범위 내----------. 다만, 대구사격장의 이용료는 별표 3 중 비고란의 제3호에 따른다.
1. 다음 각목의 유공자증 소지자 및 배우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3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1. --- 각 목---------- 1급부터 3급까지--------- 1명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
2. 1호 각목에 따른 유공자 유족중 선순위자(유족증 소지자) 단, 선순위자가 부·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부 포함	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유족증 소지자). 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현 행	개 정 안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5. 의상자증 소지자(의상자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보조인 1인 포함) 또는 의사자유족증 소지자	5. ---------- 1명 ----------
6. 노인, 어린이,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 단, 별표 3에 별도의 이용료가 책정된 경우는 제외	6. ---------- 1명 ----------. 다만--------- 각 해당자별 ----------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라.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마.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바.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④ 별표 3의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의 경우에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	④ ---------- 10퍼센트----------.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사용자 및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 사용·이용료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	1. ---------- 사용 시작일 1일 전----------
2.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자가 이용개시일 전	2. ---------- 이용 시작일 전

현 행	개 정 안
일까지 취소·연기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이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연기일 다음날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날---------- 반환하고, 이용 시작일 ---------- 종료일까지의 ----------
3.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3. 강습에 따른 월 이용료는 강습 시작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하고, 강습 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퍼센트를 뺀 후 반환
4. 상업 또는 부대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행사일전 미리 설치된 것도 사용한 것으로 본다)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4. 상업시설 ----------(행사일 전이라도 미리 설치한 것이 있는 경우 ----------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5. ---------- 또는 ---------- 또는 ----------
6. 방송료를 내고 체육시설을 방송 및 촬영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6. ---------- 등에 ----------
7.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7. ------ 그 밖에 ----------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의 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자 등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 경우 ----------.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 시설 안----------.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 사용기간 중 ---------- 경우---------- 받아 이를 ----------.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③ -------- 사용기간이 끝남과 ----------. ---- 이를 이행---------- 대집행----------.
제19조(입장권) ①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및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입장권)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각급학교 교내 체육대회 개최시의 해당학교 교사 및 학생	3. ---------- 개최 시 ----------
4. 전용 사용자측의 행사요원	4. 전용사용자측----------
5. 보호자가 있는 6세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자로서 주민등록증 등을 휴대한 자	5. ---------- 6세 이하---------- 사람으로서---------- 지닌 사람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그 밖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매표·수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등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시설에서 매표하며, 시장이 수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분(전산발매를 포함한다)과 위탁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20조(매표·수표 및 검인) ① ---------- 해당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생 략)	제23조(체육시설의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발전·선수육성·체육시설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
③ 수탁기관은 수탁체육시설의 사용허가·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그램 운영	③ ---------- 사용허가 및 사용료·이용료 ----------

현 행	개 정 안
과 연계한 강습비 등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고, 체육발전과 선수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권한을 별표1에서 정한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단, 사업소에 한한다.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 제23조에 따른 ---------- 별표 1----------. 다만, 사업소에 한정하여 위임한다.

현 행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관리기관
시민운동장		축구장(육상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야구장		
		시민체육관		
		정구장		
		유소년축구장		
		씨름장		
대구실내빙상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대구체육공원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보조경기장		
		대구스포츠기념관		
	암벽등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로 2-46	
	론볼장			
	육상진흥센터	실내육상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88(삼덕동)	
		육상아카데미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100(삼덕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구전설로 1	
대구체육관		실내체육관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부속유·검도장		
		부속역도장		
만촌경기장		자전거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	
		인라인롤러경기장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	
범어궁도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121-17	
두류수영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23	
두류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94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30	
성서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트랙 야외공연장 ·성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어로빅장,체력단련장) ·성서실내게이트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3	

개 정 안

[별표1]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및 관리기관(제2조 관련)

명칭			위치	관리기관
시민운동장		축구장(육상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야구장		
		시민체육관		
		정구장		
		유소년축구장		
		스쿼시장		
대구실내빙상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대구체육공원	대구스타디움	주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80	
		보조경기장		
		대구스포츠기념관		
	암벽등반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월드컵로 2-46	
	론볼장			
	씨름장			
	육상진흥센터	실내육상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88(삼덕동)	
		육상아카데미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술관로 100(삼덕동)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구전설로 1	
대구체육관		실내체육관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체육관로 39	
		부속유·검도장		
		부속역도장		
만촌경기장		자전거경기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	
		인라인롤러경기장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팔현길 241	
범어궁도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50길 121-17	
두류수영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23	
두류테니스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94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130	
성서운동장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인라인트랙 야외공연장 ·성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어로빅장,체력단련장) ·성서실내게이트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원로 133	

현 행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시 민 운동장	육 상 장		주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축 구 장		주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야간	300,000	450,000	750,000	1,120,000
	야 구 장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시민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정 구 장			면당 20,000	면당 30,000	면당 40,000	면당 60,000
	유소년축구장			70,000	100,000	200,000	300,000
	씨 름 장			50,000	70,000	100,000	150,000
대 구 스타디움	주 경기장	육상장	주 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야 간	150,000	220,000	450,000	670,000
		축구장	주 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야 간	750,000	1,120,000	1,500,000	2,250,000
	보 조 경기장	육상장	주 간	50,000	7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100,000	300,000	450,000
		축구장	주 간	200,000	300,000	500,000	750,000
			야 간	300,000	450,000	750,000	1,120,000
	야외공연장(1회4시간)					70,000	100,000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주 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 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제1항제1호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시 민 운동장	축 구 장		주간	전체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3시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야간	전체	900,000	1,300,000	1,800,000	2,500,000
				3시간	750,000	1,120,000	1,500,000	2,250,000
	야 구 장		주간	전체	250,000	400,000	450,000	750,000
				3시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전체	180,000	270,000	360,000	540,000
				3시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시민체육관		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정 구 장 (면당)				20,000	30,000	40,000	60,000
	유소년축구장(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스쿼시장 (면당)		주간(3시간)		20,000	30,000	40,000	60,000
대 구 스타디움	주 경기장	육상장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축구장	주간	전체	1,000,000	1,500,000	2,000,000	3,000,000
				3시간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야간	전체	900,000	1,300,000	1,800,000	2,500,000
				3시간	750,000	1,120,000	1,500,000	2,250,000
	보 조 경기장	육상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축구장	주간	전체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3시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전체	360,000	540,000	720,000	1,080,000
				3시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야외공연장(1회4시간)						70,000	100,000
대 구 체육공원	암벽등반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씨름장		주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야구장		주간	전체	500,000	750,000	1,000,000	1,500,000
				3시간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야간	전체	360,000	540,000	720,000	1,080,000
				3시간	300,000	450,000	600,000	900,000

현 행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육상진흥센 터	실내육상경기장		주 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야 간	150,000	220,000	330,000	500,000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실내경기장(다목적시설)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 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강 변 축구장	천연잔디		주 간	면당 100,000	면당 150,000	면당 300,000	면당 450,000
	인조잔디		주 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대구실내빙상장			주·야간	시간당 50,000	시간당 50,000	시간당 70,000	시간당 100,000
범어궁도장			주간 3시간	30,000	40,000	50,000	70,000
두 류 운동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센타코트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2시간 70,000	2시간 80,000
			야 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2시간 90,000	2시간 100,000
		제1서브코 트	주 간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25,000	2시간 30,000
			야 간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35,000	2시간 40,000
		서브코트(면당)	주 간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25,000	2시간 30,000
			야 간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35,000	2시간 40,000
	야구장			50,000	70,000	100,000	150,000
두 류 수영장	경영풀		09:00~18:00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09:00~12:00	210,000	310,000	420,000	630,000
			12:00~18:00	450,000	670,000	900,000	1,350,000
	경 영 연습풀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다이빙장		09:00~18:00	210,000	310,000	500,000	750,000
			09:00~12:00	60,000	90,000	180,000	270,000
			12:00~18:00	150,000	220,000	360,000	540,000

개 정 안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육상진흥센 터	실내육상경기장		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실내경기장(다목적시설)		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야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강 변 축구장(면당)	천연잔디		주간	전체	250,000	370,000	750,000	1,00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대구실내빙상장			주·야간(시간당)		50,000	70,000	70,000	100,000
범어궁도장			주간 3시간		30,000	40,000	50,000	70,000
두 류 운동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면당)	센타코트	주간	전체	100,000	150,000	200,000	300,000
				2시간	-	-	70,000	80,000
			야간	전체	150,000	220,000	300,000	450,000
				2시간	-	-	90,000	100,000
		제1서브코트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서브코트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야구장				50,000	70,000	100,000	150,000
두 류 수영장	경영풀		09:00~18:00		600,000	900,000	1,200,000	1,800,000
			09:00~12:00		210,000	310,000	420,000	630,000
			12:00~18:00		450,000	670,000	900,000	1,350,000
	경 영 연습풀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다이빙장		09:00~18:00		210,000	310,000	500,000	750,000
			09:00~12:00		60,000	90,000	180,000	270,000
			12:00~18:00		150,000	220,000	360,000	540,000

현 행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대 구 체육관	실 내 체 육 관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 간	150,000	220,000	300,000	450,000
	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만 촌 경기장	자전거경기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	수영장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체육관	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 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소강당	주 간			50,000	70,000
		야 간			70,000	100,000
	탁구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0,000	60,000	9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주 간	90,000	130,000	150,000	220,000
		야 간	130,000	200,000	220,000	33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		주 간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25,000	2시간 30,000
		야 간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35,000	2시간 40,000
대덕승마장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개 정 안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대 구 체육관	실 내 체 육 관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부속도장 및 유·검·역도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만 촌 경기장	자전거경기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		주 간		50,000	70,000	100,000	150,000
		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올림픽 기 념 국 민 생활관	수영장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소강당	주간	4시간	-	-	50,000	70,000
		야간	4시간	-	-	70,000	100,000
	탁구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0,000	60,000	9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주 간		90,000	130,000	150,000	220,000
		야 간		130,000	200,000	220,000	330,000
두류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대덕승마장		주 간		100,000	150,000	200,000	300,000

현 행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성 서 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주 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테니스장 (면당)		주 간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25,000	2시간 30,000
			야 간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35,000	2시간 40,000
	야외공연장(1회4시간)					70,000	100,000
	수영장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대 구 사격장	실 내 사격장	공기총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런닝타켓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결선사격장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화약총 (25m,50m)	주 간	30,000	40,000	40,000	50,000
	클레이 사격장	트 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주 간	면당 40,000	면당 50,000	면당 50,000	면당 6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주 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테니스장 (면당)		주 간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25,000	2시간 30,000
			야 간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35,000	2시간 40,000

개 정 안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성 서 운동장	축구장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전체	120,000	180,000	360,000	54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야외공연장(1회4시간)						70,000	100,000
	수영장		09:00~18:00		250,000	370,000	500,000	750,000
			09:00~12:00		100,000	150,000	200,000	300,000
			12:00~18:00		200,000	300,000	400,000	600,000
대 구 사격장	실 내 사격장	공기총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런닝타켓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결선사격장 (10m)	주 간		20,000	30,000	30,000	40,000
		화약총 (25,50m)	주 간		30,000	40,000	40,000	50,000
	클레이 사격장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주 간		면당 40,000	면당 50,000	면당 50,000	면당 60,000
환경자원 사업소 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현 행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	축 구 장 (인조잔디)	주 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 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 체육관	주 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 간	100,000	150,000	220,000	330,000
	탁 구 장 (1, 2)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0,000	60,000	90,000
	풋 살 장 (면당)	주 간	1시간 20,000	1시간 30,000	1시간 40,000	1시간 50,000
		야 간	1시간 30,000	1시간 40,000	1시간 50,000	1시간 60,000
	테니스장 (면당)	주 간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25,000	2시간 30,000
		야 간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35,000	2시간 40,000
비 고	1. 삭제 2. 축구 및 야구장 체육경기는 1경기 기준이며, 초과경기당 해당 사용료의 10%를 추가함 3. 조기 사용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4. (생략) 5.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는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6.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함 7. (생략) 8.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하되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0.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1. 면당요금을 부과하는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두류테니스장, 성서운동장 테니스장,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테니스장, 풋살장(족구장)의 야간요금은 별표7의 부대시설 사용료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 정 안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성서산업 단 지 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주간	전체	180,000	250,000	500,000	750,000
			3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전체	120,000	180,000	360,000	540,000
			3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목적 체육관	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야간		70,000	100,000	150,000	220,000
	탁구장 (1, 2)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 간		30,000	40,000	60,000	90,000
	풋살장 (면당)	주간	1시간	20,000	30,000	40,000	50,000
		야간	1시간	30,000	40,000	50,000	60,000
	테니스장 (면당)	주간	전체	30,000	40,000	60,000	80,000
			2시간	-	-	25,000	30,000
		야간	전체	40,000	50,000	80,000	100,000
			2시간	-	-	35,000	40,000
비 고	1. 사용 면적과 시간을 분할하여 전용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전용사용료에 분할 비율을 곱하여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2. 〈삭 제〉 2. 조기 사용 시는 해당시설 주간사용료의 5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 3. (현행의 제4호와 같음) 4. 환경자원사업소 주변영향지역(달성군 다사읍 방천리·서재리·박곡리)에 소재한 체육동호회 및 거주자가 참가자의 50%이상인 경우 전용사용료의 50%를 감면함 5. 육상진흥센터의 실내육상경기장은 전지훈련팀이 1회 1주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함 6. (현행의 제7호와 같음) 7. 시민운동장 유소년축구장, 성서운동장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분할 1면에 대해 주간 1시간당 평일 40,000원, 토·공휴일 50,000원을 징수하며, 야간에는 10,000원을 가산한다. 8.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은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료의 5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9. 성서산업단지 체육공원 축구장을 풋살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를 징수하고, 풋살장을 족구장으로 분할 대관 시 풋살장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10. 면당 요금을 부과하는 스쿼시장, 테니스장, 풋살장(족구장)과 성서운동장 및 성서산업단지체육공원 축구장의 야간요금은 별표 7의 부대시설사용료 중 조명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1. 천연잔디 경기장의 경우 시설보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사용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사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현 행

[별표3]

체육시설이용료(주 · 야간)(제10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시 민 운동장	~~육 상 장~~		~~1회2시간당~~		~~500~~	~~300~~	~~10,000~~
	야 구 장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씨 름 장		1회2시간당		500	300	10,000
	체력단련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시민체육관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정 구 장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유소년축구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대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육상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보조경기장	육상장	1회2시간당		500	300	10,000
대구체육공원 암벽등반장			1회 2시간당		2,000	1,400	30,000
대구실내 빙 상 장	링 크		1회	어 른	3,500	2,4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100	60,000
				어린이 · 노인	2,500	1,700	50,000
대구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부속도장 및 유 · 검 · 역도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범어궁도장	궁도장		1회 3시간당		2,000	1,400	40,000
	활 대여		1개당		1,000		
	화살 대여		5개당		500		
두류운동장	야구장		1회 2시간당		1,500	1,000	30,000

개 정 안

[별표3]

체육시설이용료(주 · 야간)(제10조제1항제2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시 민 운동장	야 구 장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씨 름 장		1회2시간당		500	300	10,000
	체력단련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시민체육관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정 구 장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유소년축구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스쿼시장		1회1시간당		4,000	2,800	80,000
대 구 스타디움	주경기장	육상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보조경기장	육상장	1회2시간당		500	300	10,000
대 구 체육공원	암벽등반장		1회 2시간당		2,000	1,400	30,000
	씨름장		1회 2시간당		500	300	10,000
대구실내 빙 상 장	링 크		1회	어 른	3,500	2,4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100	60,000
				어린이 · 노인	2,500	1,700	50,000
대구체육관	실내체육관		1회2시간당		2,000	1,400	40,000
	부속도장 및 유 · 검 · 역도장		1회2시간당		1,000	700	20,000
범어궁도장	궁도장		1회 3시간당		2,000	1,400	40,000
	활 대여		1개당		1,000		
	화살 대여		5개당		500		
두류운동장	야구장		1회 2시간당		1,500	1,000	30,000

현 행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두 류 수영장	실내 수영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 · 노인		2,000	1,500	40,000
	실외 파도풀	1회	어 른	토 · 공휴일	20,000	14,000	-
				평 일	14,000	10,000	-
			청소년 군 인	토 · 공휴일	15,000	10,000	-
				평 일	10,000	7,000	-
			어린이 경 로	토 · 공휴일	10,000	7,000	-
				평 일	7,000	5,000	-
			유 아	토 · 공휴일	5,000	3,000	-
				평 일			
만촌경기장	자전거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	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 · 노인		2,000	1,500	40,000
	체육관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탁구장	1시간	어 른	단식	2,000	1,400	40,000
				복식	3,000	2,100	
			청소년 · 군인 어린이 · 노인	단식	1,700	1,200	34,000
				복식	2,500	1,7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어 른		3,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경기장	1회	어 른		1,500	1,100	30,000
			청소년 · 군인		1,000	700	20,000
			어린이 · 노인		800	600	16,000

개 정 안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두 류 수영장	실내 수영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 · 노인		2,000	1,500	40,000
		정기 (15회)	어 른		35,000	-	-
			청소년 · 군인		30,000	-	-
			어린이 · 노인		20,000	-	-
	실외 파도풀	1회	어 른	토 · 공휴일	20,000	14,000	-
				평 일	14,000	10,000	-
			청소년 군 인	토 · 공휴일	15,000	10,000	-
				평 일	10,000	7,000	-
			어린이 경 로	토 · 공휴일	10,000	7,000	-
				평 일	7,000	5,000	-
			유 아	토 · 공휴일	5,000	3,000	-
				평 일			
만촌경기장	자전거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안병근올림픽 기념유도관	경기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 · 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 · 노인		2,000	1,500	40,000
	체육관	1회 2시간	어 른		2,500	1,700	30,000
			청소년 · 군인 어린이 · 노인		2,000	1,400	25,000
	탁구장	1시간	어 른	단식	2,500	1,700	40,000
				복식	2,000	1,400	-
			청소년 · 군인 어린이 · 노인	단식	2,000	1,400	34,000
				복식	1,700	1,200	-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어 른		3,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만촌롤러 스케이트장	경기장	1회	어 른		1,500	1,100	30,000
			청소년 · 군인		1,000	700	20,000
			어린이 · 노인		800	600	16,000

현 행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1인당 이용료 단 체	1인당 이용료 월회원
대덕승마장	경 기 장					1회 1시간	어 른	30,000	21,000	400,000
							청소년·군인	20,000	14,000	300,000
							어린이·노인	15,000	10,000	200,000
							자마이용자	350,000/월		
승마힐링센터	재활승마					1회		30,000	21,000	
	체험승마					1회		10,000		
	일반상담					1회		20,000		
	집단상담					1회		10,000		
성서운동장	수 영 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노인	2,000	1,500	40,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당		1,000	700	20,000
대구사격장	실내사격장	공기총	10M	사 대		1회 1시간당		800	500	
						1회 2시간당		1,500	1,000	
				전자표적	소총	1회 1시간당		800		
						1회 2시간당		1,500		
					권총	1회 1시간당		900		
						1회 2시간당		1,800		
		화약총	25M	사대	권총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속사	1회 1시간당		4,500	3,000	
						1회 4시간당		14,000	10,000	
				전자표적	권총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1회 1시간당		4,000		
						1회 4시간당		13,000		
					속사	1회 1시간당		6,000		
						1회 4시간당		20,000		
		화약총	50M	사 대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전자표적	소총	1회 1시간당		4,500		
					권총	1회 4시간당		16,000		
		런닝타겟				1회 1시간당		2,500	2,000	
						1회 2시간당		5,000	4,000	

개 정 안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1인당 이용료 단 체	1인당 이용료 월회원
대덕승마장	경 기 장					1회 1시간	어 른	30,000	21,000	400,000
							청소년·군인	20,000	14,000	300,000
							어린이·노인	15,000	10,000	200,000
							자마이용자	350,000/월		
승마힐링센터	재활승마					1회		30,000	21,000	
	체험승마					1회		10,000		
	일반상담					1회		20,000		
	집단상담					1회		10,000		
성서운동장	수 영 장					1회	어 른	3,500	2,500	70,000
							청소년·군인	3,000	2,000	60,000
							어린이·노인	2,000	1,500	40,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어 른	3,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대구사격장	실내사격장	공기총	10M	사 대		1회 1시간당		800	500	
						1회 2시간당		1,500	1,000	
				전자표적	소총	1회 1시간당		800		
						1회 2시간당		1,500		
					권총	1회 1시간당		900		
						1회 2시간당		1,800		
		화약총	25M	사대	권총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속사	1회 1시간당		4,500	3,000	
						1회 4시간당		14,000	10,000	
				전자표적	권총 센터파이어 스탠다드	1회 1시간당		4,000		
						1회 4시간당		13,000		
					속사	1회 1시간당		6,000		
						1회 4시간당		20,000		
		화약총	50M	사 대		1회 1시간당		1,500	1,000	
						1회 4시간당		5,000	3,500	
				전자표적	소총	1회 1시간당		4,500		
					권총	1회 4시간당		16,000		
		런닝타겟				1회 1시간당		2,500	2,000	
						1회 2시간당		5,000	4,000	

현 행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대구사격장	클레이 사격장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접시25장		8,000	7,000	
	관광 사격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실탄25발 접시25장	24,000	20,000	
				실탄10발 접시10장	11,000	9,000	
		권 총	22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3,000	11,000	
			9mm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38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357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공기소총 공기권총	4.5mm	실탄20발 표적 2장	4,000	3,000	
				실탄10발 표적 1장	2,000	1,500	
	전투체험사격장		1회당 (탄창 200발)	어른	14,000	12,000	
				어린이·청소년	11,000	9,000	
			탄창추가				1,000
	스크린사격장		1종목당	어른	2,000	1,500	
				어린이·청소년	1,500	1,000	
	비비탄사격장		1종목당	어른	3,000	2,500	
				청소년	2,500	2,000	
성서산업 단지 체육공원	탁구장		1시간	어른	단식	2,000	1,400	40,000
					복식	3,000	2,100	-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단식	1,700	1,200	34,000
					복식	2,500	1,700	-
비 고	1. ~ 12. (생략)						

개 정 안

구 분	이용구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개 인	단 체	월회원
대구사격장	클레이 사격장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접시25장		8,000	7,000	
	관광 사격	트랩, 스키트, 아메리칸트랩	1라운드	실탄25발 접시25장	24,000	20,000	
				실탄10발 접시10장	11,000	9,000	
		권 총	22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3,000	11,000	
			9mm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38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357구경	실탄10발 표적 1장	16,000	13,000	
		공기소총 공기권총	4.5mm	실탄20발 표적 2장	4,000	3,000	
				실탄10발 표적 1장	2,000	1,500	
	전투체험사격장		1회당 (탄창 200발)	어른	14,000	12,000	
				어린이·청소년	11,000	9,000	
			탄창추가				1,000
	스크린사격장		1종목당	어른	2,000	1,500	
				어린이·청소년	1,500	1,000	
	비비탄사격장		1종목당	어른	3,000	2,500	
				청소년	2,500	2,000	
성서산업 단지 체육공원	탁구장		1시간	어 른	단식	2,500	1,700	40,000
					복식	2,000	1,400	-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단식	2,000	1,400	34,000
					복식	1,700	1,200	-
	체육관		1회 2시간	어 른		2,500	1,700	30,000
				청소년,군인, 어린이,노인		2,000	1,400	25,000
비 고	1. ~ 2. (현행과 같음)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함						

현 행

[별표4]

체육시설조기이용료(제10조제1항제3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시민운동장	정 구 장	1월	28,000
	씨 름 장	1월	7,000
두류운동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서브코트)	1월	35,000
두류테니스장	경 기 장	1월	35,000
비 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포함)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제1급 내지 제3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하며 생활체육관, 테니스장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어린이·노인은 50% 할인(다만, 중복할인 불가)		

개 정 안

[별표4]

체육시설조기이용료(제10조제1항제3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이 용 구 분	기 준	1인당 이용료
시민운동장	정 구 장	1월	28,000
	스 쿼 시 장	1월	56,000
두류운동장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서브코트)	1월	35,000
두류테니스장	경 기 장	1월	35,000
대구체육공원	씨 름 장	1월	7,000
~~비 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포함)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장애인(제1급 내지 제3급은 보호자 1인 포함하며 생활체육관, 테니스장에 한함)·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어린이·노인은 50% 할인(다만, 중복할인 불가)~~		

현 행

[별표7]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제6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시설				수용요금×일수/30+사용전기요금+기본사용료	·(수용요금×일수/30) : 선납 ·기본사용료 -축구·야구장 : 50,000 -기타경기장 : 30,000
방송시설		앰 프		50,000	
		확성기(1조) 1일		5,000	
		이동식앰프		20,000	
전기				수용요금×일수/30+사용전기요금	
식당·다과점·매점·점포·사무실·도장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광판		1일		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기본사용료 -칼라 : 100,000 -흑백 : 30,000 -스코아보드 : 20,000 ·조명시설 사용시 기본사용료만 징수
인조잔디관수료		1회(2시간)		27,000	
롤러스케이트대여료		1회		2,000	
후로아카바		1회		100,000	
냉·난방		1회		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및 유류비용	기본사용료 : 30,000
실탄보관		1발·1년		5	
		1년		300,000	대형보관함(60×70×105㎝정도)
		1년		200,000	소형보관함(60×70×70㎝정도)
숙 소		2인실(1박)		25,000	대구사격장, 육상진흥센터
		4인실(1박)		40,000	대구사격장
		단체(10인 기준)		100,000	대구사격장
멀티미디어실(육상진흥센터)		평일	주간	50,000	
			야간	70,000	
		토·공휴일	주간	70,000	
			야간	100,000	
대덕승마장		마방		평일10,000,공휴일15,000	1두 기준/1일
				90,000	1두 기준/월
		말 관리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건비~마장유지 보수비
성 서 산업단지 체육시설	소회의실	평일	주간	30,000	1회 4시간 기준
			야간	50,000	〃
		토·공휴일	주간	50,000	〃
			야간	70,000	〃
	세미나실	평일	주간	50,000	〃
			야간	70,000	〃
		토·공휴일	주간	70,000	〃
			야간	100,000	〃
기타시설물		시장이 따로 정함			

개 정 안

[별표7] 체육시설의 부대시설사용료(제10조제1항제6호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조명시설				사용전기요금+기본사용료	·기본사용료 -축구·야구장 : 50,000 -기타경기장 : 30,000
방송시설		앰 프		50,000	
		확성기(1조) 1일		5,000	
		이동식앰프		20,000	
전기				사용전기요금	
식당·다과점·매점·점포·사무실·도장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전광판		1일		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기본사용료 -칼라 : 100,000 -흑백 : 30,000 -스코아보드 : 20,000
인조잔디관수료		1회(2시간)		27,000	
롤러스케이트대여료		1회		2,000	
바닥 보호 매트		1회		100,000	
냉·난방		1회		기본사용료+사용전기요금 및 유류비용	기본사용료 : 30,000
실탄보관		1발·1년		5	
		1년		300,000	대형보관함(60×70×105㎝정도)
		1년		200,000	소형보관함(60×70×70㎝정도)
숙 소		2인실(1박)		25,000	대구사격장, 육상진흥센터
		4인실(1박)		40,000	대구사격장
		단체(10인 기준)		100,000	대구사격장
대덕승마장		마방		평일10,000,공휴일15,000	1두 기준/1일
				90,000	1두 기준/월
		말 관리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건비~마장유지 보수비
구 분		기 준		평 일	토·공휴일	비 고
육상진흥센터		멀티미디어실	주간	50,000	70,000	1회 4시간 기준
			야간	70,000	100,000	〃
성서산업단지 체육시설		소회의실	주간	30,000	50,000	〃
			야간	50,000	70,000	〃
		세미나실	주간	50,000	70,000	〃
			야간	70,000	100,000	〃
기타시설물		시장이 따로 정함				
비 고		조명시설, 전기, 전광판, 냉난방 등의 사용 전기량이 개별적으로 계량되지 않는 시설의 경우 일괄적으로 전체 사용 전기요금을 부과함				

관 계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아이조아카드) 시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 아이조아카드를 발급하여 시에서 자체 모집한 참여업체를 이용할 경우 우대 및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
3. 대구광역시 공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 감면
5.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
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이용료 및 감면대상 등의 정비를 위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장 김형동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	내 용	조치결과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대구체육관 관리소	○ 사용허가시간 문구 수정 (제9조4항) - 행사없이 적치된 시설물의 사용시간 산정시 주간시간으로 한정 필요	○ 반영 - 주간 적용 단서 조항 삽입
	○ 초과시간 전용사용료 문구 수정 (제12조) - 가산 비율 10% 적용시 야간 전용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으므로, 당초와 같이 20% 유지 필요	○ 반영 - 20% 가산으로 수정
시민소통과 / 대구시설공단	○ 감면대상 추가 (제13조제3항) - 자원봉사자(연50시간 이상) - 다자녀가정 범위 한정	○ 반영 - 자원봉사자 이용료 감면 추가 - 미성년자 포함 다자녀가정으로 범위 한정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 관리소	○ 신규(준공예정) 체육시설 반영 (별표1, 2, 3, 4) - 시민운동장 스쿼시장 추가 - 시민운동장 씨름장 삭제 및 체육공원 씨름장 추가	○ 반영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 천연잔디 구장 사용허가 제한 (별표2) - 대구스타디움 일반인 대관 제한 - 강변축구장 일반행사 대관 제한	○ 미반영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어 당초안 유지